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특정업무직[운영지원직]
직원(시설정비원 3조3교대) 공개채용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믿음과 소통을 바탕으로 성취하는 신(信)통(通)한(汗)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

1. 채용 개요

모집분야	채용인원	채용형태	임용 예정일자	근무지
시설정비원 (3조3교대)	1명	특정업무직(운영지원직)	'26.10.12.(월)	공단 고용개발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2. 지원 자격요건

응시자격	
〈자격사항〉	• 연령: 「특정업무직(운영지원직) 직원 관리규칙」에 따른 정년에 미달하는 자 – 시설정비원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 시 합격이 취소됨) • 학력 제한 없음 • 3조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경력 유경험자 또는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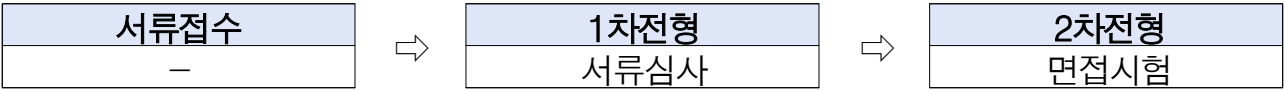
3. 근무조건

□ 근무조건 및 수행업무

구분	주요내용																		
근무조건	• 근무시간 및 근로형태																		
	<table><tr><th>직렬</th><th>근로형태</th><th>근무시간 (근로시간)</th><th>휴게시간</th><th>월근로시간</th></tr><tr><td rowspan="5">시설정비원</td><td rowspan="5">3조3교대</td><td>09:00-18:00</td><td>12:00-13:00</td><td rowspan="5">233 (30)</td></tr><tr><td>09:00-09:00</td><td>12:00-13:30</td></tr><tr><td></td><td>18:00-19:30</td></tr><tr><td></td><td>24:00-05:00</td></tr><tr><td>휴무 (23시간)</td><td>06:00-07:00 (10시간)</td></tr></table>	직렬	근로형태	근무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월근로시간	시설정비원	3조3교대	09:00-18:00	12:00-13:00	233 (30)	09:00-09:00	12:00-13:30		18:00-19:30		24:00-05:00	휴무 (23시간)	06:00-07:00 (10시간)
	직렬	근로형태	근무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월근로시간														
	시설정비원	3조3교대	09:00-18:00	12:00-13:00	233 (30)														
			09:00-09:00	12:00-13:30															
				18:00-19:30															
				24:00-05:00															
			휴무 (23시간)	06:00-07:00 (10시간)															
	※ 「특정업무직(운영지원직) 직원 관리규칙」에 따라 기관 운영 상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 형태별 접수 상황(특정 근무형태 미응시 · 적격자 없음)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지원자의 동의 하에 근무 형태를 달리하여 채용할 수 있음																		
※ 3조 3교대 근무의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 보수 : 특정업무직 해당 직렬 1등급 1단계 급여 지급																			
<table><tr><th>직렬</th><th>월 급여</th><th>1등급 1단계 직무급</th><th>중식보조비</th><th>교통보조비</th></tr><tr><td>시설정비원 (3조3교대)</td><td>2,416,900원</td><td>2,156,900원</td><td>140,000원</td><td>120,000원</td></tr></table>	직렬	월 급여	1등급 1단계 직무급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시설정비원 (3조3교대)	2,416,900원	2,156,900원	140,000원	120,000원									
직렬	월 급여	1등급 1단계 직무급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시설정비원 (3조3교대)	2,416,900원	2,156,900원	140,000원	120,000원															
※ 특정업무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및 금액은 매 회계연도별로 공단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지급																			
※ 월 209시간 기준 임금으로,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직무급 결정되며 야간근무(30시간)수당 별도 지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고용형태 및 직급: 특정업무직 주임 사용직원 (기간제근로자)*																			
* 3개월 시용(기간제)근무 후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여부를 결정함																			
수행업무	○ 고용개발원 청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고용개발원 내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 수행																		

4. 전형절차 및 전형일정

□ 전형절차 개요



□ 모집분야별 전형절차

모집분야	전형단계 및 합격배수		
	서류접수	1. 서류심사	2. 면접시험
시설정비원(3조3교대)	이메일 접수	서류(5배수)	전 모집분야 1배수

□ 전형절차별 세부내용

전형 단계		세부내용								
서류접수	—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17.(목) ~ 9. 28.(월) 10:00 ○ 제출 서류: 입사지원서류(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우대가점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접수 방법 (유선 전화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031-728-7121) — 이메일 접수: cmk@kead.or.kr(채용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을 '직렬_응시원서_성명' 으로 기재 ※ 접수 마감일 '26.9.28.(월) 10:00:00까지 도착분만 접수 인정함 ○ '자격사항' 또는 '경력사항' 에 반드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시 자격요건 미충족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차전형	서류심사	○ 대상자: 특정업무직 (시설정비원 3조3교대) ○ 서류심사: 2026.10.2.(금) 실시 예정 ○ 심사내용: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 <table><tr><th>계</th><th>경력 및 경험기술서</th><th>자기소개서</th><th>가산점</th></tr><tr><td>100점</td><td>40점</td><td>60점</td><td>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내용은 우대사항 참조)</td></tr></table> ○ 선발배수: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안내: 2026.10.2.(금) 예정(개별통보)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요청할 예정이며 (10.2.(금)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오니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심사위원별 심사점수의 평균이 6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계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가산점	100점	40점	60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내용은 우대사항 참조)
계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가산점							
100점	40점	60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내용은 우대사항 참조)							

2차전형	면접시험	○ 면접시험: <u>2026.10.6.(화) 예정</u> ○ 전형방법: 직무능력기반 면접 ○ 평가항목 <table><tr><th>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항목</th><th>배점</th></tr><tr><td>고객중심</td><td>20</td><td>전문성</td><td>20</td></tr><tr><td>의사소통</td><td>15</td><td>실행력</td><td>15</td></tr><tr><td>문제해결능력</td><td>15</td><td>책임의식</td><td>15</td></tr></table> ○ 선발배수: 모집분야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심사점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에 대해서는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1차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 모집분야 최종합격자 1배수 선발(1배수 범위 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고객중심	20	전문성	20	의사소통	15	실행력	15	문제해결능력	15	책임의식	15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고객중심	20	전문성	20															
의사소통	15	실행력	15															
문제해결능력	15	책임의식	15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6.10.8.(목) <u>*합격자 개별 연락처를 통해 합격 통보 예정</u> ○ 합격자 임용 예정일: <u>2026.10.12.(월)</u> – 임용일은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전형절차 일정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5. 우대사항 증빙서류 제출

구분	우대내용	유의사항
장애인	전형단계별 각 과목별 만점의 5%(중증장애인은 10%) 가산점 부여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함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각 과목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가산점 적용 비율을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 후 입사지원 시 관련사항 기재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서의 장애항목 또는 보훈항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우대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절차에서 해당 우대가점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의 서류만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채용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채용전형 단계별 만점의 5% ~ 10% 가점 부여)
- 우대항목 중복시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6. 응시자격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구분	제출서류
작성방법	○ 작성: 응시원서 내 [경력사항] 기재 또는 [자격사항] 기재란 작성 ○ 응시자는 반드시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제출자료	○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경력 확인을 위해 반드시 업무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출방법	○ 2026.10.2.(금)까지 대상자에게 연락해 서류 송부 요청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시 채용 전형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마스킹처리) ○ 제출한 서류는 자격요건 확인에만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7. 유의사항 등 기타사항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10:00까지 지원해야 하며 접수마감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며, 접수 후에는 담당자에게 유선연락(031-728-7121)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 등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항목(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 및 경험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 전형절차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예정일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정책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교명, 학력, 전공, 학점, 외국어 점수, 추천인 등 직무능력과 관련되지 않고 불필요한 선입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고용개발원 운영관리부 채용문의 031-728-712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삭제 <개정 2022.5.4.>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